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최종익〉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77호
- 나. 제출자 : 채우진 의원 외 8명
- 다. 제출일자 : 2019년 5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5월 29일

3. 제안이유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돋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장애인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에 따른 등록장애인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제3항)
- 나. 장애인 가정의 출산축하금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4항)
 -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일 경우 1인당 150만원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 150만원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 100만원
(안 제4조제2항)
- 부 · 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일 경우의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 (안 제4조제3항)
- 출산축하금 중복지급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
(안 제4조제4항)

- 다. 출산축하금 지원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라.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에 보호자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에 해당 또는 미해당 하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의 확인 사항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사항 : 모 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추가함 (안 별지 제1호서식)
- 마.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자 명부’의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중 “신생아와 관계”, “부 또는 모 등록장애인여부”를 추가함 (안 별지 제2호서식)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2조(장애인 등록)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 제8조(혼인과 출산)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필요

다. 입법예고 : 2019. 5. 28. ~ 2019. 6. 3.(의견제출 없음)

6. 검토의견

○ 조례안 개정취지

장애인 가정의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돋고 나아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리보호에도 기여하여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음.

○ 개정안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항의 경우는 「장애인복지법」¹⁾에서 정한 등록장애인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용어 정의를 신설
- 안 제4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출하금 지급 기준 및 지원액을 규정 <표 1> 하였음

<표 1>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앤
제4조(지급기준) (생 략) <u><신 설></u>	제4조(지급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산축하금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신생아의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 150만원 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 경우 : 150만원 3.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 100만원
<u><신 설></u>	③ 부·모가 모두 등록장애인인 경우에는 제2 항 각 호 중에서 가장 높은 출산축하금 하나 만 지급한다.
<u><신 설></u>	④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에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출 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절차에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장애인 여부를 해당 동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출산축하금 지급기준과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자 하였음.

○ 종합의견

- 2019.5.31. 기준 마포구 주민등록 인구는 총 374,719명 중 등록장애인은 13,113명으로 인구대비 3.50%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서울시 평균 4.03%(주민등록 인구 9,762,062명, 등록장애인 393,214명) 보다 0.23% 낮음.

〈표 2〉 등록장애인 및 주민등록 인구 현황

2019.5.31.기준					(단위 : 명)
구분	마포구 (A)	서울특별시 (B)	구별 평균 (B/25개구)	마포구 비율 (A/B)	
등록장애인 수	13,113	393,214	15,728	3.33%	
주민등록 인구	374,719	9,762,062	390,482	3.83%	

(자료출처: 마포구, 행정안전부)

- 2018년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서울시 전체는 231명이며 마포구는 2명의 여성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제정은 13개구가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작게는 30만원 많게는 150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표 3〉 신생아 1인당 출산축하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누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마포구 (지원금액)	8,472 (1,499,000)	3,277 (420,400)	2,739 (370,800)	2,456 (707,800)	구비 지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17 (여15, 남2)	8 (여7, 남1)	7 (여6, 남1)	2 (여2)	시비 지급

(자료출처: 마포구)

-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제7조²⁾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 하고 같은법 제9조³⁾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⁴⁾(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⁵⁾(혼인과 출산)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조례안이 의결·공포됨에도 등록장애인 부·모의 신생아 출산축하금 지원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제도시행 홍보와 신청·처리에 많은 관심이 필요 할 것이라 사료됨.

-
- 2)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리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4)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 5)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자치구 출산장려(축하)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도입 시기	자녀수					지급기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1	종로구	2008	300	1,000	1,500	1,500	1,500	출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18.06.30. 이전 출생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18.07.01. 이후 출생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이상 150만원
2	중구	2007	200	1,000	2,000	3,000	5,000	출생일 현재 12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3	용산구	2009	100	200	500	1,000	1,000	출생일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4	성동구	2007	-	200	1,000	1,500	1,500	출생일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18.7.1이후 출생아부터 둘째:20만원 셋째:100만원 넷째:150만원
5	광진구	2008	100	300	500	1,000	5,000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6	동대문구	2008	100	600	1,000	2,000	3,000	출생일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7	중랑구	2009	-	500	1,000	2,000	2,000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8	성북구	2008	100	3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9	강북구	2007	-	300	600	1,000	1,500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의 부 또는 모
10	도봉구	2008	-	300	500	1,000	1,000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영아의 부 또는 모
11	노원구	2008		200	500	1,000	1,000	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2019 상향조정예정
12	은평구	2009	100	350	700	1,000	2,000	출생일 현재부터 출산양육 지원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3	서대문구	2009	100	200	500	500	500	서대문구를 첫 주소로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와 함께 주소지가 되어있는 보호자
14	마포구	2011	100	500	1,000	3,000	5,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5	양천구	2008	-	500	700	1,000	2,000	신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16	강서구	2008	100	500	1,000	1,500	2,000	출생일 기준 1년이상 기간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7	구로구	2010	-	300	600	2,000	2,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도입 시기	자녀수					지급기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이상	
18	금천구	2008	-	500	700	1,000	1,000	출생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
19	영등포구	2008	100	500	3,000	5,000	5,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20	동작구	2009	300	500	1,000	2,000	2,000	출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중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자
21	관악구	2008	-	200	300	500	1,000	출생일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
22	서초구	2007	-	500	1,0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중인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
23	강남구	2007	200	500	1,000	3,000	3,000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4	송파구	2009	-	300	500	1,000	1,000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180일 이내 신청
25	강동구	2009	100	200	500	1,000	1,000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기간 동안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첫째아는 2017년도부터 지급함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원인원 및 지원금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2016년	인 원	3,277	2,094	1,028	146	8	1
	금 액	420,400	209,400	154,200	43,800	8,000	5,000
2017년	인 원	2,739	1,707	902	116	10	4
	금 액	370,800	170,700	135,300	34,800	10,000	20,000
2018년	인 원	2,456	1,482	840	117	10	7
	금 액	707,800	148,200	392,000	108,600	24,000	35,000

마포구 · 서울특별시 등록장애인 현황

○ 마포구 등록장애인 현황 : 13,113명

(2019. 5월말 기준)

등급	장애인수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 (지적, 자폐)	기타
	13,113	5,849	1,782	1,467	1,431	1,061	1,523
1급	1,149	175	25	242	366	301	40
2급	1,768	280	261	41	258	354	574
3급	2,091	655	193	67	281	406	489
4급	1,986	1,161	426	78	166		155
5급	2,823	1,712	573	100	173		265
6급	3,296	1,866	304	939	187		

* 기타 : 신장(604명), 정신(493명), 언어(107명), 장루요루(101명), 간(85명), 호흡기(48명), 뇌전증(36명), 심장(36명), 안면(13명)

○ 서울시 등록장애인 현황 : 393,214명

(2019. 5월말 기준)

등급	장애인수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발달 (지적, 자폐)	기타
	393,214	178,732	52,614	41,830	41,254	32,407	46,377
1급	32,232	4,902	939	6,370	9,279	9,105	1,637
2급	52,364	8,892	6762	1,003	7,934	11,119	16,654
3급	65,156	20,499	5,990	1,797	8,563	12,183	16,124
4급	58,312	33,710	12,594	2,180	5,245		4,583
5급	85,763	51,954	18,008	3,315	5,107		7,379
6급	99,387	58,775	8,321	27,165	5,126		

* 기타 : 신장(16,706명), 정신(16,368명), 언어(3,248명), 장루요루(2,812명), 간(2,449명), 호흡기(2,108명), 뇌전증(1,231명), 심장(1,071명), 안면(384명)

○ 마포구 동별 등록장애인 현황

동명	장애인 수	동명	장애인수	비고
합계	13,113			
공덕동	1,501	서교동	675	
아현동	676	합정동	599	
도화동	766	망원1동	865	
용강동	604	망원2동	757	
대흥동	429	연남동	546	
염리동	446	성산1동	704	
신수동	667	성산2동	2,017	
서강동	695	상암동	1,166	

장애인 거주 순위

1. 성산2동
2. 공덕동
3. 상암동

○ 마포구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

연령	장애인 수	여성 장애인 수	남성 장애인 수	비고
합계	13,113			
0-9	146	84	62	
10-19	340	228	112	
20-29	571	359	212	(음영부분) 출산추정
30-39	707	477	230	주요 연령대 비율
40-49	1,325	896	429	(2,603명, 19.85%)
50-59	2,178	1,476	702	
60-69	2,681	1,567	1,114	
70-79	3,149	1,546	1,603	
80-89	1,786	734	1,052	
90-99	226	66	160	
100-109	4	2	2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리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